

구인신청서 (채용지원서비스용)

※ (*)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,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, []에는 해당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구인인증번호(접수번호)	접수일	처리기간: 1일
--------------	-----	----------

업체 현황	사업체명(*)	지사
		홈페이지
	사업자등록번호(*)	대표자(*)
	소재지(*) (우편번호:)	
업종(*)	③사업내용(*)	④근로자 수(*)

구인 사항	모집직종(*)	모집인원(*)	명	
	직무내용(*)			
	학력(*) [] () 이상 [] 관계없음	경력(*) [] 신입 [] 경력(년 개월 이상) [] 관계없음		
	근무예정지 (*) [] 사업체 본사 [] 사업체 지사 [] 소재지와 동일 [] 그 밖의 다른 사업체	주소 (우편번호:)		
	고용형태(*) []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[]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(기간 개월)	(복수선택 가능) [] 파견근로 [] 대체인력 ([] 계약기간 만료 후 상용직 전환 검토)		
	[] 시간제 ※위의 고용형태를 시간제로 고용하기를 희망하는 경우			

근로 조건	임금지급형태 및 금액 (*)	[] 연봉 [] 월급 [] 일급 [] 시급	상여금 별도()% [] 총액 [] 기본급	[] 면접 후 협의 가능
	근무시간 및 형태	(: ~ :) [] 시간협의 가능 [] 2교대 [] 3교대	1주당 소정근로시간 () 시간	[] 주 () 일 근무 [] 격일 근무
	퇴직금(*)	[] 퇴직금 [] 퇴직연금 [] 해당사항 없음(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등)		
	사회보험	[] 고용보험 [] 산재보험 [] 건강보험 [] 국민연금	식사제공 [] () 식 제공 [] 식비 지급	

전형 사항	접수마감일 (*)	[] 마감일(년 월 일) [] 채용 시까지(2개월 이내)	접수방법 [] 방문 [] 우편 [] 전자우편 [] 기타 ()
			전형방법 [] 서류 [] 면접 [] 필기 [] 기타 ()
	제출서류	[] 이력서 [] 자기소개서 [] 졸업증명서 [] 경력증명서 [] 기타()	
	채용 담당자(*)	성명	채용담당부서
	휴대전화번호	전자우편	팩스번호
	문자서비스([√] 받음 [] 받지 않음)		전자우편서비스([] 받음 [] 받지 않음)

채용지원 서비스 신청	[] 구인·구직 만남의 날(일시:) [] 채용대행서비스([] 서류전형 [] 면접전형) [] 채용박람회 ※ 행사명(2022대전광역시여성취업창업박람회), 일시(2022.09.21.), 장소(대전광역시 시청)
-------------	---

구인정보 제공동의 (*)	[]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공 동의 [√]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제공 동의 []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제공 동의 [] 그 밖의 워크넷을 이용하는 고용서비스 제공기관 동의 [] 동의하지 않음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(*)	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‘사업자등록증명’ 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[] 동의 [] 동의하지 않음

「직업안정법 시행령」 제5조제1항 및 「직업안정법 시행규칙」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구인신청합니다.

2022 년 월 일

사업체명 대표자 또는 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대전광역시·배재대ICT융합새일센터 귀중

첨부서류	1. 「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서 1부(고용형태가 파견근로인 경우에만 해당) 2. 파견근무지, 파견 예정업무, 임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 간에 체결예정인 근로계약서 1부(고용형태가 파견근로인 경우에만 해당)	수수료 없음
------	--	--------

유의사항

- 「직업안정법 시행령」 제5조제2항에 따라 구인신청 시 신청인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하므로 상담 담당자에게 신분증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, 모집직종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직종별로 구인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야 합니다.
- 구인신청 후 채용 또는 사정변경 등으로 구인신청을 취소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구인신청을 한 직업안정기관에 즉시 해당 내용을 알려 구인신청과 관련된 사항을 수정 또는 변경하여야 하고, 구인신청의 유효기간(15일 이상 2개월 이내) 중에 구인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같은 직종에 대한 구인신청을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.
-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「직업안정법」 제4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업무처리 절차



